

□ 신고 개요

- 근거법령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,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5조
*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 대상에 해당
- 신고기간: 2025.7.1.~7.31(법정 신고기간)
- 신고방법: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온라인 신고
- 메인메뉴 상단 해외공사상황통보 → 시공/준공/타절 중 선택하여 신고
- 신고대상: 2025.6.30.자 기준 시공 중인 해외공사
(공기 1년 미만, 설계·FS·조달 프로젝트는 신고 면제)

□ 신고 절차

① 시스템 접속

-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접속
-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규 계정을 만들어 신고
* 입력한 연락처로 처리 결과 자동 안내

② 대상공사 확인 및 입력

- 메뉴 경로: 해외공사상황통보 → 시공경과/준공/타절등록 → 해당 버튼 (시공/준공/타절) 클릭 후 공사별 내용 입력
* 준공통보를 했더라도 시공률 100% 미입력 시 신고 대상

③ 최종 제출

- 작성내용 확인 후 [저장] → [제출] 버튼을 클릭
- 문서 상태가 '작성중' 또는 '보완요청'인 경우, 반드시 [제출] 클릭하여 완료
*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내 시공경과통보 매뉴얼 참고

□ 유의사항(필독)

- 미화 5억불 이상 공사는 '응급의료시설' 항목 반드시 입력
- 미화 5억불 이상 공사는 현장에서 50km 이내 병원이 없는 경우 현장 내 응급 의료시설(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)과 의료인력(1명 이상) 미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
* 50km 이내 병원이 있는 경우 병원명만 입력
- 관련규정: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3 및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
-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미수금은 공시 금액과 동일하게 신고
- 미수금 회수 불가 시 '미수금 대손처리' 항목에 입력
- 미수금, 유보금, 클레임 금액 등 잔금 존재 시, 타절·준공통보 여부와 관계 없이 시공경과통보 대상. 끝.